|  |  |  |
| --- | --- | --- |
|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령 제 22호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개정안이 2015년 4월 24일 중화인민공화국 제2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4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개정본을 공표하는 바이며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시진핑(習近平)  2015년 4월 24일  **제1장 총칙**  **제1조** 광고활동을 규율하고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광고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사회경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상품경영자 또는 서비스제공자가 일정한 매체와 형식을 통하여 자신이 홍보하고자 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개하는 상업광고활동은 이 법의 관할을 받는다.  이 법에서 광고주라 함은 상품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타인에게 위탁하여 광고를 설계, 제작, 발표하는 개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을 지칭한다.  이 법에서 광고경영자라 함은 의뢰를 받아 광고의 설계, 제작, 대리 용역을 제공하는 개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을 지칭한다.  이 법에서 광고발표자라 함은 광고주 또는 광고주로부터 의뢰를 받은 광고경영자를 위해 광고를 발표하는 개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을 지칭한다.  이 법에서 광고대변인이라 함은 광고에서 자신의 명의 또는 이미지를 이용하여 상품, 서비스를 추천, 증명하는 광고주 이외의 개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을 지칭한다.  **제3조** 광고는 진실하고 합법적이어야 하며 건강한 표현형식으로 광고의 내용을 표현해야 하고 사회주의 정신문명건설 및 중화민족의 우수한 전통문화 선양의 요구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4조** 광고는 허위 또는 오해를 부르는 내용을 포함해서는 아니되며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소비자의 오해를 유도해서는 아니된다.  광고주는 광고 내용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제5조** 광고주, 광고경영자, 광고발표자는 광고활동에 종사함에 있어 법률,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고 신의성실 및 공정경쟁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6조**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전국의 광고 감독관리 업무를 총괄하며 국무원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광고관리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지방 공상행정관리부서는 해당 관할구역의 광고 감독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광고관리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제7조** 광고 업계 조직은 법률, 법규 및 정관의 규정에 따라 업계 규범을 제정하고 업계의 자율을 강화하며 업계의 발전을 촉진시키고 회원업체가 법에 따라 광고활동에 종사하도록 유도하며 광고 업계의 성실성·신용성 향상을 촉진시켜야 한다.  **제2장 광고 내용 준칙**  **제8조** 광고에 상품의 성능, 기능, 생산지, 용도, 품질, 성분, 가격, 생산자, 유통기한, 약속 등을 표시하거나 서비스의 내용, 제공자, 형식, 품질, 가격, 약속 등을 표시하는 경우 정확하고 분명하며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홍보하는 상품을 구매하고 서비스 이용 시 추가로 사은품을 정증함을 광고에 표시한 경우 추가로 증정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품종, 규격, 수량, 기한 및 방식을 명시해야 한다.  법률, 행정법규에 광고에 명시해야 하는 내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현저하고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제9조** 광고에 다음 각 호의 경우가 있어서는 아니된다.  (1)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기, 국가, 국장, 군기, 군가, 군장을 사용하거나 변칙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국가기관, 국가기관 인사의 명의 또는 이미지를 사용하거나 변칙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국가급', '최고급', '최상' 등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4) 국가의 존엄성 또는 이익에 손실을 입히거나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경우;  (5) 사회의 안정을 방해하거나 사회 공공이익에 손실을 입히는 경우;  (6) 신변과 재산의 안전을 해하거나 개인 프라이버시를 누설하는 경우;  (7) 사회 공공질서를 방해하거나 사회 풍습에 위배되는 경우;  (8) 음란, 색정, 도박, 미신, 공포, 폭력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9) 민족·종족·종교·성별 차별적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10) 환경 보호, 자연자원 보호 또는 문화재 보호를 방해하는 경우;  (11)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이 금지하는 기타 경우.  **제10조** 광고는 미성년자 및 장애인의 심신건강을 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 광고 내용 관련 사항이 행정허가가 필요한 사항일 경우 허가받은 내용에 부합해야 한다.  광고에 데이터, 통계자료, 조사결과, 문헌, 인용문구 등 인증(引證) 내용을 사용하는 경우 진실성과 정확성을 보장해야 하며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인증(引證) 내용이 적용범위와 유효기한이 있을 경우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제12조** 광고가 특허제품 또는 특허방법과 연관된 경우 특허번호와 특허종류를 명시해야 한다.  특허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광고에서 특허권을 취득한 것으로 사칭해서는 아니된다.  특허권을 취득하지 못한 특허출원과 이미 종료, 취소, 무효화된 특허를 이용하여 광고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13조** 광고는 기타 생산경영자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폄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 광고는 식별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소비자로 하여금 광고 식별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대중전달매체는 뉴스보도의 형식으로 변칙적으로 광고를 발표해서는 아니된다. 대중전달매체를 통해 발표되는 광고는 '광고' 표시를 분명히 하여 기타 비(非)광고 정보와 차별을 두어야 하며 소비자의 오해를 유발시켜서는 아니된다.  라디오방송국, TV방송국은 광고를 발표함에 있어 시간 길이, 방식 등에 관한 국무원 관련 부서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광고 시간 길이를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  **제15조** 마취제·정신질환약품·의료용독성약품·방사성약품 등 특수약품, 약품류 이제독(易制毒) 화학품, 마약중독 치료제·의료기기·치료방법에 대한 광고를 금지한다.  전 항 규정 이외의 처방약의 광고는 국무원 위생행정부서 및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서가 공동 지정한 의학·약물학 전문 잡지에 발표해야 한다.  **제16조** 의료, 약품, 의료기기 광고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된다.  (1) 효능, 안전성을 확언하거나 보증하는 내용;  (2) 치유율 또는 유효율을 설명하는 내용;  (3 기타 약품, 의료기기의 효능 및 안전성 또는 기타 의료기구와 비교하는 내용;  (4 광고대변인을 이용하여 추천, 증명하는 내용;  (5)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이 금지하는 기타 내용.  약품 광고의 내용이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서의 비준을 득한 설명서와 불일치해서는 아니되며 금기사항, 부작용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처방약 광고는 '이 광고는 의학·약물학 전문가만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광고입니다.'란 문구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하며 비(非)처방약 광고는 '약품 설명서 또는 약사의 지도내용에 따라 구매 및 사용하시기 바랍니다.'란 문구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개인에게 자가용 의료기기를 추천하는 광고는 '제품 설명서를 자세히 읽어보신 후 또는 의료진의 지도하에 구매 및 사용하시기 바랍니다.'란 문구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의료기기 제품 등록 증명서류에 금기내용, 주의사항이 기재되어 있을 경우 광고에 '금기내용과 주의사항은 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란 문구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제17조** 의료, 약품, 의료기기 광고를 제외한 기타 광고에 질병 치료 기능을 언급하는 것을 금지하며 의료용어를 사용하거나 홍보하고자 하는 상품을 약품, 의료기기와 혼동하게 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18조** 보건식품 광고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된다.  (1) 효능, 안전성을 확언하거나 보증하는 내용;  (2) 질병 예방, 치료 기능과 연관된 내용;  (3) 광고 상품이 건강에 필수적임을 명시하거나 암시하는 내용;  (4) 약품, 기타 보건식품과 비교하는 내용;  (5) 광고대변인을 이용하여 추천, 증명하는 내용;  (6)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이 금지하는 기타 내용.  보건식품 광고에 '이 상품은 약물 대체품이 아닙니다.'란 문구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제19조** 라디오방송국, TV방송국, 신문·잡지·음반·영상물 출판업체, 인터넷정보 서비스업체는 건강·양생 지식을 소개하는 등 형식으로 의료·약품·의료기기·보건식품 광고를 변칙적으로 발표해서는 아니된다.  **제20조** 대중전달매체 또는 공공장소에 모유 완전 대체 또는 일부 대체가 가능함을 주장하는 유아용 유제품, 음료수 및 기타 식품의 광고를 발표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21조** 농약, 동물용 의약품, 사료 및 사료첨가제의 광고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된다.  (1) 효능, 안전성을 확언하거나 보증하는 내용;  (2) 과학연구단체, 학술기구, 기술홍보기구, 업계협회 또는 전문가, 이용자의 명의 또는 이미지를 이용하여 추천, 증명하는 내용;  (3) 유효율을 설명하는 내용;  (4) 안전사용규정에 위배되는 문자, 언어 또는 화면;  (5)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이 금지하는 기타 내용.  **제22조** 대중전달매체 또는 공공장소, 공공교통수단, 옥외에 연초 광고를 발표하는 것을 금지한다. 미성년자에게 그 어떠한 형식의 연초 광고 발송을 금지한다.  기타 상품 또는 서비스의 광고, 공익광고를 이용하여 연초제품의 명칭, 상표, 포장, 장식 및 유사한 내용을 홍보하는 것을 금지한다.  연초제품의 생산자 또는 판매자가 발표하는 주소 변경, 명칭 변경, 구인 등 공고에 연초제품의 명칭, 상표, 포장, 장식 및 유사한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된다.  **제23조** 주류 광고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된다.  (1) 음주를 권유, 선동하거나 무절제 음주를 선전하는 내용;  (2) 음주 동작을 보이는 내용;  (3) 차량, 선박, 항공기 조종 활동을 표현하는 내용;  (4) 긴장감·초조감 해소, 체력 증가 등 음주의 효능을 명시 또는 암시하는 내용.  **제24조** 교육·훈련 광고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된다.  (1) 진학, 시험 통과, 학위·학력 또는 합격증서 취득 또는 교육·훈련의 효과에 대한 보증 성격의 약속을 명시 또는 암시하는 내용;  (2) 관련 시험기구 또는 그 종업원, 시험문제 작성자가 교육·훈련에 참가함을 명시 또는 암시하는 내용;  (3) 과학연구단체, 학술기구, 교육기구, 업계협회, 전문가, 수혜자의 명의 또는 이미지를 이용하여 추전, 증명하는 내용.  **제25조** 투자유치 등 투자수익이 예상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광고는 발생 가능 리스크와 리스크 책임 부담에 대해 합리적인 제시 또는 경고를 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된다.  (1) 미래의 효과, 수익 또는 이와 관련된 상황에 대해 보증 성격의 약속을 하거나 원금 보장, 위험 제로 또는 수익 보장 등을 명시 또는 암시하는 내용(단, 별도의 국가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  (2) 학술기구, 업계협회, 전문가, 수혜자 등의 명의 또는 이미지를 이용하여 추천, 증명하는 내용.  **제26조** 부동산 광고는 주택 공급원 정보가 진실해야 하고 면적은 건축면적 또는 내부 건축면적으로 표시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된다.  (1) 가치 상승 또는 투자수익을 약속하는 내용;  (2) 구체적인 참조물에 도달하는 시간으로 부동산 위치를 표시하는 내용;  (3)국가의 가격관리 관련 규정에 위배되는 내용;  (4) 규획 또는 건설중에 있는 교통, 상업, 문화교육시설 및 기타 시정(市政) 조건에 대해 오해를 유발시키는 홍보를 하는 내용;  **제27조** 농작물 종자, 임목(林木) 종자, 초(草) 종자, 종축·종금, 수산물 묘종 및 묘종 재배 광고는 품종 명칭, 생산성능, 성장수량 또는 생산량, 품질, 내성, 특수 사용가치, 경제가치, 재배·양식하기에 적합한 범위와 조건 등에 대해 진실하고 분명하며 명백하게 표현해야 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된다.  (1) 과학적으로 검증이 불가능한 확언;  (2) 효능을 표명하는 확언 또는 보증;  (3) 경제수익에 대한 분석, 예측 또는 보증 성격의 약속;  (4) 과학연구단체, 학술기구, 기술보급기구, 업계협회 또는 전문가, 이용자의 명의 또는 이미지를 이용하여 추천, 증명하는 내용.  **제28조** 조작된 내용 또는 오해를 유발시키는 내용으로 소비자를 기만하고 소비자의 오해를 유도하는 광고는 허위광고에 해당된다.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되는 광고는 허위광고이다.  (1) 상품 또는 서비스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2) 상품의 성능, 기능, 생산지, 용도, 품질, 규격, 성분, 가격, 생산자, 유효기간, 매출상황, 영예 취득 상황 등 정보 또는 서비스의 내용, 제공자, 형식, 품질, 매출상황, 영예 취득 상황 등 정보 및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약속 등 정보가 사실과 일치하지 않고 구매 행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날조, 조작 또는 검증이 불가능한 과학연구결과, 통계자료, 조사결과, 문헌, 인용문구 등 정보를 증명자료로 사용한 경우;  (4) 상품 또는 서비스의 사용효과를 조작한 경우;  (5) 허위 또는 오해를 유발시키는 내용으로 소비자를 기만하고 소비자의 오해를 유도하는 기타 행위.  **제3장 광고 행위 규범**  **제29조** 라디오방송국, TV방송국, 신문·잡지 출판업체가 광고발표 업무를 취급하는 경우 광고업무 전문기구를 설치하고 필요한 인력과 광고발표 업무에 필요한 장소,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현급 이상 지방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광고발표 등기 수속을 이행해야 한다.  **제30조** 광고활동 시 광고주, 광고경영자, 광고발표자 간에 법에 따라 서면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31조** 광고주, 광고경영자, 광고발표자는 광고활동 과정에서 그 어떠한 형식의 부정경쟁 행위를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2조** 광고주는 광고의 설계, 제작, 발표 용역을 의뢰함에 있어 적법한 경영자격을 구비한 광고경영자, 광고발표자에게 의뢰해야 한다.  **제33조** 광고주 또는 광고경영자가 타인의 명의 또는 이미지를 광고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 서면동의를 득해야 하며; 민사행위 무능력자·제한능력자의 명의 또는 이미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보호자의 사전 서면동의를 득해야 한다.  **제34조** 광고경영자, 광고발표자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광고업무 수주등기제도, 심사제도, 기록관리제도를 수립하고 완비해야 한다.  광고경영자, 광고발표자는 법률, 행정법규에 의거하여 관련 증명서류를 검사하고 광고의 내용과 대조확인한다. 내용이 일치하지 않거나 증명서류가 완비되지 못한 광고의 경우 광고경영자는 설계, 제작, 대리 용역을 제공해서는 아니되고 광고발표자는 발표해서는 아니된다.  **제35조** 광고경영자, 광고발표자는 요금 기준과 요금 정산방식을 공표해야 한다.  **제36조** 광고발표자가 광고주, 광고경영자에게 제공하는 도달율, 시청율, 조회수, 발행량 등 자료는 진실된 자료이어야 한다.  **제37조** 그 어떤 업체 또는 개인도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의해 생산, 판매가 금지된 제품 또는 취급이 금지된 서비스, 광고발표가 금지된 상품 또는 서비스의 광고를 설계, 제작, 대리, 발표해서는 아니된다.  **제38조** 광고대변인은 광고에서 상품, 서비스를 추천, 증명함에 있어 사실에 근거해야 하고 이 법과 관련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본인이 사용한 적이 없는 상품 또는 이용한 적이 없는 서비스를 추천, 증명해서는 아니된다.  만 10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광고대변인으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허위광고 추천, 증명으로 인해 행정처벌을 받은지 3년 미만인 개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을 광고대변인으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제39조** 초등학교, 중학교, 유치원 내에서 광고활동을 해서는 아니되며 초등학생, 중학생 및 유아의 교재, 참고서, 연습장, 문구, 교구, 교복, 학교버스 등을 이용하여 변칙적으로 광고를 발표해서는 아니된다. 단, 공익광고의 경우는 예외이다.  **제40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중전달매체에 의료, 약품, 보건식품, 의료기기, 화장품, 주류, 미용 광고와 미성년자의 심신겅강에 해로운 온라인 게임 광고를 발표해서는 아니된다.  만 14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상품 또는 서비스 광고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된다.  (1)학부모에게 광고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매를 요구하도록 권유하는 내용;  (2) 불안전 행위 모방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  **제41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관련부서를 동원하여 야외장소, 공간, 시설 등에 발표하는 광고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고 옥외광고 설치규획 및 안전요구사항을 제정해야 한다.  옥외광고 관리방법은 지방성 법규, 지방정부 규장으로 정한다.  **제42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옥외광고를 설치해서는 아니된다.  (1) 교통안전시설, 교통표시를 이용하는 경우;  (2) 도시공공시설, 교통안전시설, 교통표시, 소방시설, 소방안전표시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생산 또는 대중의 생활을 방해하거나 도시의 면모를 훼손하는 경우;  (4) 국가기관, 문화재 보호단체, 풍경명승지역 등의 건축통제지대 또는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가 옥외광고의 설치를 금지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제43조** 그 어떤 업체 또는 개인도 당사자의 허락 또는 요청 없이 그의 주택, 교통수단 등으로 광고를 발송해서는 아니되며 전장정보 형태로 광고를 발송해서도 아니된다.  전자정보 형태로 발송하는 광고에는 발송자의 진실한 신분과 연락처를 명시해야 하며 수신자에게 수신 거절 방식을 제공해야 한다.  **제44조** 인터넷을 이용한 광고활동은 이 법의 각 항 규정을 적용받는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광고를 발표, 발송함에 있어 이용자의 정상적인 인터넷 이용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된다. 인터넷 팝업창 형식으로 발표하는 광고는 '닫기' 표시를 분명히 하여 한번의 클릭으로 닫아지도록 해야 한다.  **제45조** 공공장소 관리자 또는 통신사업 경영자, 인터넷 정보 서비스 제공자는 그가 알고 있거나 알고 있어야 하는 자신의 장소 또는 정보 전송·발표 플랫폼을 이용한 불법광고의 발송, 발표를 단속해야 한다.  **제4장 감독과 관리**  **제46조** 의료, 약품, 의료기기, 농약, 동물용 약품 및 보건식품의 광고를 발표하거나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 하는 기타 광고를 발표하고자 하는 경우 광고발표에 앞서 관련 부서(이하 '광고심사기관'으로 약칭)에서 광고 내용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하며 심사를 거치지 않고 발표해서는 아니된다.  **제47조** 광고주는 광고심사를 신청함에 있어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관련 증명서류를 광고심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광고심사기관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심사결정을 내리고 심사비준문서의 사본을 동급 공상행정관리부서에 발송해야 한다. 광고심사기관은 광고 비준 정보를 지체없이 사회에 공표해야 한다.  **제48조** 그 어떤 업체와 개인도 광고심사비준문서를 날조, 변조하거나 양도해서는 아니된다.  **제49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광고 감독·관리 직책을 이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불법 광고활동에 종사한 혐의가 있는 장소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2)법위반 혐의가 있는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표인, 주요책임자 및 기타 관계자를 신문하고 관련 업체 또는 개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4) 법위반 혐의가 있는 당사자에게 관련 증명서류의 기한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5) 법위반 혐의가 있는 광고와 관련된 계약서, 어음, 장부, 광고작품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사열, 복사할 수 있다.  (6)법위반 혐의가 있는 광고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광고물품, 경영수단, 설비 등 재물을 차압, 압류할 수 있다.  (7)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불법광고의 일시적인 발표 중지를 명할 수 있다.  (8)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한 기타 직권.  공상행정관리부서는 광고 모니터링 제도를 수립, 완비하고 모니터링 조치를 개선하여 불법 광고행위를 제때에 발견하고 법에 따라 조사·처리해야 한다.  **제50조**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서는 국무원 관련 부서와 공동으로 대중전달매체 광고발표행위 규범을 제정한다.  **제51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고 당사자는 이에 협조해야 하며 공상행정관리부서의 직권 행사를 거절하거나 방해해서는 아니된다.  **제52조** 공상행정관리부서와 관련 부서 및 그 업무인력은 광고 감독·관리 활동 과정에서 알게된 상업비밀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제53조** 그 어떤 업체와 개인도 이 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공상행정관리부서와 관련 부서에 신고, 제보할 권리가 있다. 공상행정관리부서와 관련 부서는 신고·제보 접수 전화, 우편주소 또는 이메일 주소를 사회에 공개해야 하며 신고·제보를 접수한 부서는 신고·제보 접수일로부터 7일(근무일 기준) 내에 사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 제보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공상행정관리부서와 관련 부서가 법에 따라 직책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어떠한 업체와 개인도 그 상급 기관 또는 감찰기관에 제보할 권리가 있다. 제보를 받은 기관은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고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제보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관련 부서는 신고자, 제보자를 위해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제54조** 소비자협회와 기타 소비자단체는 이 법의 규정을 어기고 허위광고를 발표하여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와 사회공공이익을 해하는 기타 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사회감독을 실시한다.  **제5장 법률책임**  **제55조** 이 법의 규정을 어기고 허위광고를 발표하는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가 광고 발표 중지를 명하고 광고주에게 해당 범위 내의 영향 제거를 명하며 광고요금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광고요금의 산정이 불가능하거나 금액이 불합리하게 낮은 경우에는 20만위안 이상 100만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년 내에 불법행위를 3회 이상 행하였거나 기타 심각한 정황이 있을 경우 광고요금의 5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광고요금의 산정이 불가능하거나 금액이 불합리하게 낮은 경우에는 100만위안 이상 200만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 더불어 영업집조를 취소할 수 있고 광고심사기관이 광고심사비준문서 취소, 1년 내에 당사자의 광고심사 신청 불수리 처벌을 내릴 수 있다.  의료기구가 전 항의 불법행위를 행하였고 정황이 심각한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내리며 이와 더불어 위생행정부서가 진료과목을 취소하거나 의료기구개업허가증을 취소할 수 있다.  광고경영자, 광고발표자가 허위광고임을 알고 있거나 알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설계, 제작, 대리 발표한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가 광고요금을 몰수하고 광고요금의 3배이상 5배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병과하되 광고요금의 산정이 불가능하거나 금액이 불합리하게 낮은 경우에는 20만위안 이상 100만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년 내에 3회 이상의 불법행위를 행하였거나 기타 심각한 정황이 있을 경우 광고요금의 5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광고요금의 산정이 불가능하거나 금액이 불합리하게 낮은 경우에는 100만위안 이상 200만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 더불어 관련 부서가 광고발표 업무 일시 중지, 영업집조 취소, 광고발표등기증서 취소의 처벌을 내릴 수 있다.  광고주, 광고경영자, 광고발표자가 행한 본 조 제1항, 제3항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56조** 이 법의 규정을 어기고 허위광고를 발표하여 소비자를 기만하고 소비자의 오해를 유도함으로써 상품을 구매하였거나 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이 침해당한 경우 광고주가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진다. 광고경영자, 광고발표자가 광고주의 진실한 명칭, 주소지 및 유효한 연락처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 소비자는 광고경영자, 광고발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소비자의 생명·건강과 관련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허위광고로 인해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광고경영자, 광고발표자, 광고대변인은 광고주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전 항에 규정한 상품·서비스 이외의 기타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허위광고로 인해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허위광고임을 알고 있거나 알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설계, 제작, 대리, 발표 또는 추천, 증명한 광고경영자, 광고발표자, 광고대변인이 광고주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57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행당되는 행위가 있을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가 광고발표 중지를 명하고 광고주에게 20만위안 이상 100만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정황이 심각한 경우 영업집조 취소하고 광고심사기관이 광고심사비준문서 취소, 1년 내에 광고심사신청 불수리의 처벌을 내릴 수 있다. 광고경영자, 광고발표자의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가 광고요금을 몰수하고 20만위안 이상 100만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정황이 심각한 경우 영업집조 취소, 광고발표등기증서 취소의 처벌을 병과할 수 있다.  (1) 이 법 제9조, 제10조에서 금지하는 광고를 발표하는 행위;  (2) 이 법 제15조의 규정을 어기고 처방약 광고, 약품류 이제독(易制毒) 화학품, 마약중독 치료기기·치료방법에 대한 광고를 발표하는 행위;  (3) 이 법 제20조의 규정을 어기고 모유 완전 대체 또는 일부 대체가 가능함을 주장하는 유아용 유제품, 음료수 및 기타 식품의 광고를 발표하는 행위;  (4) 이 법 제22조의 규정을 어기고 연초 광고를 발표하는 행위;  (5) 이 법 제37조의 규정을 어기고 광고를 이용하여 생산, 판매, 광고를 금지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는 행위;  (6) 이 방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어기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대중전달매체에 의료·약품·보건식품·의료기기·화장품·주류·미용 광고 및 미성년자의 심신건강에 해로운 온라인 게임 광고를 발표하는 행위.  **제58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가 있을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가 광고 발표 중지를 명하고 광고주에게 해당 범위 내의 영향 제거를 명하며 광고요금의 1배 이상 3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광고요금의 산정이 불가능하거나 금액이 불합리하게 낮은 경우에는 10만위안 이상 20만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황이 심각한 경우 광고요금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광고요금의 산정이 불가능하거나 금액이 불합리하게 낮은 경우에는 20만위안 이상 100만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와 더불어 영업집조를 취소할 수 있으며 광고심사기관이 광고심사비준문서 취소, 1년 내에 광고심사 신청 불수리의 처벌을 내릴 수 있다.  (1) 이 법 제16조의 규정을 어기고 의료, 약품, 의료기기 광고를 발표하는 행위;  (2) 이 법 제17조의 규정을 어기고 광고에서 질병치료 기능을 언급하거나 의료용어 또는 홍보하고자 하는 상품을 약품, 의료기기와 혼동시키는 용어를 사용하는 행위;  (3) 이 법 제18조의 규정을 어기고 보건식품 광고를 발표하는 행위;  (4) 이 법 제21조의 규정을 어기고 농약, 동물용 약품, 사료 및 사료첨가제 광고를 발표하는 행위;  (5) 이 법 제23조의 규정을 어기고 주류 광고를 발표하는 행위;  (6) 이 법 제24조의 규정을 어기고 교육, 훈련 광고를 발표하는 행위;  (7) 이 법 제25조의 규정을 어기고 투자유치 등 투자수익이 예상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광고를 발표하는 행위;  (8) 이 법 제26조의 규정을 어기고 부동산 광고를 발표하는 행위;  (9) 이 법 제27조의 규정을 어기고 농작물 종자, 임목(林木) 종자, 초(草) 종자, 종축·종금, 수산물 묘종 및 묘종 재배 광고를 발표하는 행위;  (10) 이 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을 어기고 만 10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광고대변인으로 사용하는 행위;  (11) 이 법 제38조 제3항의 규정을 어기고 개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을 광고대변인으로 사용하는 행위;  (12) 이 법 제39조의 규정을 어기고 초등학교·중학교·유치원 내에서 광고를 발표하거나 초등학생·중학생·유아 용품을 이용하여 광고를 발표하는 행위;  (13) 이 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을 어기고 만 14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광고를 발표하는 행위;  (14)이 법 제46조의 규정을 어기고 심사 절차 없이 광고를 발표하는 행위.  의료기구가 전 항에 규정한 불법행위를 행하였고 그 정황이 심각한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이 법에 따라 처벌을 내리며 이와 더불어 위생행정부서가 진료과목을 취소하거나 의료기구개업허가증을 취소할 수 있다.  광고경영자, 광고발표자가 본 조 제1항에 규정한 불법행위에 해당됨을 알고 있거나 알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광고를 설계, 제작, 대리, 발표한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가 광고요금을 몰수하고 광고요금의 1배 이상 3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병과하되 광고요금의 산정이 불가능 하거나 금액이 불합리하게 낮은 경우에는 10만위안 이상 20만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황이 심각한 경우에는 광고요금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광고요금의 산정이 불가능 하거나 금액이 불합리하게 낮은 경우에는 20만위안 이상 100만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 더불어 관련 부서가 광고발표 업무 일시 중지, 영업집조 취소, 광고발표등기증서 취소의 처벌을 내릴 수 있다.  **제59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가 광고 발표 중지를 명하고 광고주에게 10만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광고의 내용이 이 법 제8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2) 광고의 인증(引證) 내용이 이 법 제11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3) 특허와 연관된 광고가 이 법 제12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4) 이 법 제13조의 규정을 어기고 광고에서 기타 생산경영자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폄하하는 경우.  광고경영자, 광고발표자가 전항에 규정한 불법행위에 해당됨을 알고 있거나 알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광고를 설계, 제작, 대리, 발표한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가 10만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광고가 식별가능성이 없어 이 법 제14조의 규정에 위배되거나 이 법 제9조의 규정을 어기고 의료, 약품, 의료기기, 보건식품 광고를 변칙적으로 발표한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시정을 명하고 광고발표자에게 10만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60조** 라디오방송국, TV방송국, 신문·잡지 출판업체가 이 법 제29조의 규정을 어기고 광고발표등기 수속 없이 광고발표 업무를 무단 취급하는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시정을 명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되 불법소득이 1망위안 이상인 경우에는 불법소득의 1배 이상 3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병과하고 불법소득이 1만위안 미만인 경우에는 5,000위안 이상 3만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병과한다.  **제61조** 광고경영자, 광고발표자가 이 법 제34조의 규정을 어기고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광고업무 관리제도를 수립, 완비하지 아니하거나 광고내용을 대조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시정을 명하고 5만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광고경영자, 광고발표자가 이 법 제35조의 규정을 어기고 요금 기준 및 요금 정산방식을 공표하지 아지한 경우 가격주관부서가 시정을 명하며 5만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62조** 광고대변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가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불법소득의 1배 이상 2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이 법 제1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어기고 의료, 약품, 의료기기 광고에서 해당 제품을 추천, 증명한 경우;  (2) 이 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을 어기고 보건식품 광고에서 해당 제품을 추천, 증명한 경우;  (3) 이 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을 어기고 본인이 사용한 적이 없는 상품 또는 이용한 적이 없는 서비스를 추천, 증명한 경우;  (4) 허위광고임을 알고 있거나 알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광고에서 상품, 서비스를 추천, 증명한 경우.  **제63조** 이 법 제43조의 규정을 어기고 광고를 발송한 경우 관련 부서가 불법행위 중지를 명하고 광고주에게 5,000위안 이상 3만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을 어기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광고를 발표함에 있어 '닫기' 표시를 분명히 하여 한번의 클릭으로 닫아지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시정을 명하고 광고주에게 5,000위안 이상 3만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64조** 공공장소 관리자 및 통신업무 경영자, 인터넷 정보 서비스 제공자가 이 법 제45조의 규정을 어기고 광고활동이 불법임을 알고 있거나 알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광고활동을 단속하지 아니한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가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불법소득이 5만위안 이상인 경우에는 불법소득의 1배 이상 3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병과하고 불법소득이 5만위안 미만인 경우에는 1만위안 이상 5만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병과한다. 정황이 심각한 경우 관련 부서가 법에 따라 관련 업무 중지 처벌을 내린다.  **제65조** 광고심사를 신청함에 있어 이 법의 규정을 어기고 진실한 상황을 속이거나 조작된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광고심사기관이 불수리 또는 신청 기각 결정을 내리고 경고를 주며 1년 내에 해당 신청인의 광고심사 신청을 수리하지 아니한다. 기만, 뇌물공여 등 부정당한 수단으로 광고심사비준을 득한 경우 광고심사기관이 해당 비준을 취소하고 10만위안 이상 20만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3년 내에 해당 신청인의 광고심사 신청을 수리하지 아니한다.  **제66조** 이 법의 규정을 어기고 광고심사비준문서를 날조, 변조 또는 양도하는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가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1만위안 이상 10만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병과한다.  **제67조** 이 법의 규정에 위배되는 불법행위를 행한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가 해당 사실을 신용기록에 기재하고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공시한다.  **제68조** 라디오방송국, TV방송국, 신문·잡지·음반·영상물 출판업체가 불법광고를 발표하거나 뉴스보도의 방식으로 변칙적으로 광고를 발표하거나 건강·양생 지식을 소개하는 등 형식으로 의료·약품·의료기기·보건식품 광고를 변칙적으로 발표하는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내리고 해당 사실을 신문출판광전부서 및 기타 관련 부서에 통보한다. 신문출판광전부서 및 기타 관련 부서는 법에 따라 책임이 있는 담당자와 직접적 책임이 있는 자에게 처분을 내려야 한다. 정황이 심각한 경우 해당 매체의 광고발표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지시킬 수 있다.  신문출판광전부서 및 기타 관련 부서가 전 항의 규정에 따라 라디오방송국, TV방송국, 신문·잡지·음반·영상물 출판업체를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법에 따라 책임이 있는 담당자와 직접적 책임이 있는 자에게 처분을 내린다.  **제69조** 광고주, 광고경영자, 광고발표자가 이 법의 규정을 어기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침권행위를 행한 경우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진다.  (1) 광고에서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의 심신건강에 손해를 가한 경우;  (2) 타인의 특허를 위조한 경우;  (3) 기타 경영자의 상품·서비스를 폄하한 경우;  (4) 타인의 허락 없이 타인의 명의 또는 이미지를 광고에 사용한 경우;  (5) 타인의 기타 합법적인 민사권익을 침해한 경우.  **제70조** 허위광고 발표 또는 이 법에 규정한 기타 불법행위로 인해 영업집조를 취소당한 회사, 기업의 법정대표인이 불법행위에 대해 개인적인 책임이 있을 경우 해당 회사, 기업이 영업집조를 취소당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회사, 기업체의 이사, 감사, 고위 관리자 직무를 담당하지 못한다.  **제71조** 이 법의 규정을 어기고 공상행정관리부서의 감독검사를 거절, 방해하거나 기타 치안관리법 위반 행위를 행한 경우 법에 따라 치안관리 처벌을 내리며;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72조** 광고심사기관이 불법적인 광고 내용을 심사비준한 경우 임명기관 또는 감찰기관이 책임이 있는 담당자와 기타 직접적 책임이 있는 자에게 처분을 내리며;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73조** 공상행정관리부서가 광고 모니터링 직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불법광고행위 또는 신고, 제보가 들어온 불법광고행위를 법에 따라 조사·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법에 따라 책임이 있는 담당자와 직접적 책임이 있는 자에게 처분을 내린다.  공상행정관리부서와 광고 관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부서의 업무인력이 직무유기, 직권남용, 사리도모를 위한 부정행위를 행한 경우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전 2항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6장 부칙**  **제71조** 국가는 공익광고 활동을 통해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을 전파하고 문명 기풍을 창도하는 것을 격려 및 지지한다.  대중전달매체는 공익광고를 발표할 의무가 있다. 라디오방송국, TV방송국, 신문·잡지 출판업체는 규정된 판면, 시간대, 시간 길이에 따라 공익광고를 발표해야 한다. 공익광고 관리방법은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서가 관련 부서와 공동으로 제정한다.  **제72조** 이 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中华人民共和国广告法**  中华人民共和国主席令第二十二号  《中华人民共和国广告法》已由中华人民共和国第十二届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十四次会议于2015年4月24日修订通过，现将修订后的《中华人民共和国广告法》公布，自2015年9月1日起施行。  中华人民共和国主席 习近平  2015年4月24日  **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了规范广告活动，保护消费者的合法权益，促进广告业的健康发展，维护社会经济秩序，制定本法。  **第二条** 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商品经营者或者服务提供者通过一定媒介和形式直接或者间接地介绍自己所推销的商品或者服务的商业广告活动，适用本法。  本法所称广告主，是指为推销商品或者服务，自行或者委托他人设计、制作、发布广告的自然人、法人或者其他组织。  本法所称广告经营者，是指接受委托提供广告设计、制作、代理服务的自然人、法人或者其他组织。  本法所称广告发布者，是指为广告主或者广告主委托的广告经营者发布广告的自然人、法人或者其他组织。  本法所称广告代言人，是指广告主以外的，在广告中以自己的名义或者形象对商品、服务作推荐、证明的自然人、法人或者其他组织。  **第三条** 广告应当真实、合法，以健康的表现形式表达广告内容，符合社会主义精神文明建设和弘扬中华民族优秀传统文化的要求。  **第四条** 广告不得含有虚假或者引人误解的内容，不得欺骗、误导消费者。  广告主应当对广告内容的真实性负责。  **第五条** 广告主、广告经营者、广告发布者从事广告活动，应当遵守法律、法规，诚实信用，公平竞争。  **第六条** 国务院工商行政管理部门主管全国的广告监督管理工作，国务院有关部门在各自的职责范围内负责广告管理相关工作。  县级以上地方工商行政管理部门主管本行政区域的广告监督管理工作，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有关部门在各自的职责范围内负责广告管理相关工作。  **第七条** 广告行业组织依照法律、法规和章程的规定，制定行业规范，加强行业自律，促进行业发展，引导会员依法从事广告活动，推动广告行业诚信建设。  **第二章 广告内容准则**  **第八条** 广告中对商品的性能、功能、产地、用途、质量、成分、价格、生产者、有效期限、允诺等或者对服务的内容、提供者、形式、质量、价格、允诺等有表示的，应当准确、清楚、明白。  广告中表明推销的商品或者服务附带赠送的，应当明示所附带赠送商品或者服务的品种、规格、数量、期限和方式。  法律、行政法规规定广告中应当明示的内容，应当显著、清晰表示。  **第九条** 广告不得有下列情形：  （一）使用或者变相使用中华人民共和国的国旗、国歌、国徽，军旗、军歌、军徽；  （二）使用或者变相使用国家机关、国家机关工作人员的名义或者形象；  （三）使用“国家级”、“最高级”、“最佳”等用语；  （四）损害国家的尊严或者利益，泄露国家秘密；  （五）妨碍社会安定，损害社会公共利益；  （六）危害人身、财产安全，泄露个人隐私；  （七）妨碍社会公共秩序或者违背社会良好风尚；  （八）含有淫秽、色情、赌博、迷信、恐怖、暴力的内容；  （九）含有民族、种族、宗教、性别歧视的内容；  （十）妨碍环境、自然资源或者文化遗产保护；  （十一）法律、行政法规规定禁止的其他情形。  **第十条** 广告不得损害未成年人和残疾人的身心健康。  **第十一条** 广告内容涉及的事项需要取得行政许可的，应当与许可的内容相符合。  广告使用数据、统计资料、调查结果、文摘、引用语等引证内容的，应当真实、准确，并表明出处。引证内容有适用范围和有效期限的，应当明确表示。  **第十二条** 广告中涉及专利产品或者专利方法的，应当标明专利号和专利种类。  未取得专利权的，不得在广告中谎称取得专利权。  禁止使用未授予专利权的专利申请和已经终止、撤销、无效的专利作广告。  **第十三条** 广告不得贬低其他生产经营者的商品或者服务。  **第十四条** 广告应当具有可识别性，能够使消费者辨明其为广告。  大众传播媒介不得以新闻报道形式变相发布广告。通过大众传播媒介发布的广告应当显著标明“广告”，与其他非广告信息相区别，不得使消费者产生误解。  广播电台、电视台发布广告，应当遵守国务院有关部门关于时长、方式的规定，并应当对广告时长作出明显提示。  **第十五条** 麻醉药品、精神药品、医疗用毒性药品、放射性药品等特殊药品，药品类易制毒化学品，以及戒毒治疗的药品、医疗器械和治疗方法，不得作广告。  前款规定以外的处方药，只能在国务院卫生行政部门和国务院药品监督管理部门共同指定的医学、药学专业刊物上作广告。  **第十六条** 医疗、药品、医疗器械广告不得含有下列内容：  （一）表示功效、安全性的断言或者保证；  （二）说明治愈率或者有效率；  （三）与其他药品、医疗器械的功效和安全性或者其他医疗机构比较；  （四）利用广告代言人作推荐、证明；  （五）法律、行政法规规定禁止的其他内容。  药品广告的内容不得与国务院药品监督管理部门批准的说明书不一致，并应当显著标明禁忌、不良反应。处方药广告应当显著标明“本广告仅供医学药学专业人士阅读”，非处方药广告应当显著标明“请按药品说明书或者在药师指导下购买和使用”。  推荐给个人自用的医疗器械的广告，应当显著标明“请仔细阅读产品说明书或者在医务人员的指导下购买和使用”。医疗器械产品注册证明文件中有禁忌内容、注意事项的，广告中应当显著标明“禁忌内容或者注意事项详见说明书”。  **第十七条** 除医疗、药品、医疗器械广告外，禁止其他任何广告涉及疾病治疗功能，并不得使用医疗用语或者易使推销的商品与药品、医疗器械相混淆的用语。  **第十八条** 保健食品广告不得含有下列内容：  （一）表示功效、安全性的断言或者保证；  （二）涉及疾病预防、治疗功能；  （三）声称或者暗示广告商品为保障健康所必需；  （四）与药品、其他保健食品进行比较；  （五）利用广告代言人作推荐、证明；  （六）法律、行政法规规定禁止的其他内容。  保健食品广告应当显著标明“本品不能代替药物”。  **第十九条** 广播电台、电视台、报刊音像出版单位、互联网信息服务提供者不得以介绍健康、养生知识等形式变相发布医疗、药品、医疗器械、保健食品广告。  **第二十条** 禁止在大众传播媒介或者公共场所发布声称全部或者部分替代母乳的婴儿乳制品、饮料和其他食品广告。  **第二十一条** 农药、兽药、饲料和饲料添加剂广告不得含有下列内容：  （一）表示功效、安全性的断言或者保证；  （二）利用科研单位、学术机构、技术推广机构、行业协会或者专业人士、用户的名义或者形象作推荐、证明；  （三）说明有效率；  （四）违反安全使用规程的文字、语言或者画面；  （五）法律、行政法规规定禁止的其他内容。  **第二十二条** 禁止在大众传播媒介或者公共场所、公共交通工具、户外发布烟草广告。禁止向未成年人发送任何形式的烟草广告。  禁止利用其他商品或者服务的广告、公益广告，宣传烟草制品名称、商标、包装、装潢以及类似内容。  烟草制品生产者或者销售者发布的迁址、更名、招聘等启事中，不得含有烟草制品名称、商标、包装、装潢以及类似内容。  **第二十三条** 酒类广告不得含有下列内容：  （一）诱导、怂恿饮酒或者宣传无节制饮酒；  （二）出现饮酒的动作；  （三）表现驾驶车、船、飞机等活动；  （四）明示或者暗示饮酒有消除紧张和焦虑、增加体力等功效。  **第二十四条** 教育、培训广告不得含有下列内容：  （一）对升学、通过考试、获得学位学历或者合格证书，或者对教育、培训的效果作出明示或者暗示的保证性承诺；  （二）明示或者暗示有相关考试机构或者其工作人员、考试命题人员参与教育、培训；  （三）利用科研单位、学术机构、教育机构、行业协会、专业人士、受益者的名义或者形象作推荐、证明。  **第二十五条** 招商等有投资回报预期的商品或者服务广告，应当对可能存在的风险以及风险责任承担有合理提示或者警示，并不得含有下列内容：  （一）对未来效果、收益或者与其相关的情况作出保证性承诺，明示或者暗示保本、无风险或者保收益等，国家另有规定的除外；  （二）利用学术机构、行业协会、专业人士、受益者的名义或者形象作推荐、证明。  **第二十六条** 房地产广告，房源信息应当真实，面积应当表明为建筑面积或者套内建筑面积，并不得含有下列内容：  （一）升值或者投资回报的承诺；  （二）以项目到达某一具体参照物的所需时间表示项目位置；  （三）违反国家有关价格管理的规定；  （四）对规划或者建设中的交通、商业、文化教育设施以及其他市政条件作误导宣传。  **第二十七条** 农作物种子、林木种子、草种子、种畜禽、水产苗种和种养殖广告关于品种名称、生产性能、生长量或者产量、品质、抗性、特殊使用价值、经济价值、适宜种植或者养殖的范围和条件等方面的表述应当真实、清楚、明白，并不得含有下列内容：  （一）作科学上无法验证的断言；  （二）表示功效的断言或者保证；  （三）对经济效益进行分析、预测或者作保证性承诺；  （四）利用科研单位、学术机构、技术推广机构、行业协会或者专业人士、用户的名义或者形象作推荐、证明。  **第二十八条** 广告以虚假或者引人误解的内容欺骗、误导消费者的，构成虚假广告。  广告有下列情形之一的，为虚假广告：  （一）商品或者服务不存在的；  （二）商品的性能、功能、产地、用途、质量、规格、成分、价格、生产者、有效期限、销售状况、曾获荣誉等信息，或者服务的内容、提供者、形式、质量、价格、销售状况、曾获荣誉等信息，以及与商品或者服务有关的允诺等信息与实际情况不符，对购买行为有实质性影响的；  （三）使用虚构、伪造或者无法验证的科研成果、统计资料、调查结果、文摘、引用语等信息作证明材料的；  （四）虚构使用商品或者接受服务的效果的；  （五）以虚假或者引人误解的内容欺骗、误导消费者的其他情形。  **第三章 广告行为规范**  **第二十九条**　广播电台、电视台、报刊出版单位从事广告发布业务的，应当设有专门从事广告业务的机构，配备必要的人员，具有与发布广告相适应的场所、设备，并向县级以上地方工商行政管理部门办理广告发布登记。  **第三十条** 广告主、广告经营者、广告发布者之间在广告活动中应当依法订立书面合同。  **第三十一条** 广告主、广告经营者、广告发布者不得在广告活动中进行任何形式的不正当竞争。  **第三十二条** 广告主委托设计、制作、发布广告，应当委托具有合法经营资格的广告经营者、广告发布者。  **第三十三条** 广告主或者广告经营者在广告中使用他人名义或者形象的，应当事先取得其书面同意；使用无民事行为能力人、限制民事行为能力人的名义或者形象的，应当事先取得其监护人的书面同意。  **第三十四条** 广告经营者、广告发布者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建立、健全广告业务的承接登记、审核、档案管理制度。  广告经营者、广告发布者依据法律、行政法规查验有关证明文件，核对广告内容。对内容不符或者证明文件不全的广告，广告经营者不得提供设计、制作、代理服务，广告发布者不得发布。  **第三十五条** 广告经营者、广告发布者应当公布其收费标准和收费办法。  第三十六条 广告发布者向广告主、广告经营者提供的覆盖率、收视率、点击率、发行量等资料应当真实。  **第三十七条** 法律、行政法规规定禁止生产、销售的产品或者提供的服务，以及禁止发布广告的商品或者服务，任何单位或者个人不得设计、制作、代理、发布广告。  **第三十八条** 广告代言人在广告中对商品、服务作推荐、证明，应当依据事实，符合本法和有关法律、行政法规规定，并不得为其未使用过的商品或者未接受过的服务作推荐、证明。  不得利用不满十周岁的未成年人作为广告代言人。  对在虚假广告中作推荐、证明受到行政处罚未满三年的自然人、法人或者其他组织，不得利用其作为广告代言人。  **第三十九条** 不得在中小学校、幼儿园内开展广告活动，不得利用中小学生和幼儿的教材、教辅材料、练习册、文具、教具、校服、校车等发布或者变相发布广告，但公益广告除外。  **第四十条** 在针对未成年人的大众传播媒介上不得发布医疗、药品、保健食品、医疗器械、化妆品、酒类、美容广告，以及不利于未成年人身心健康的网络游戏广告。  针对不满十四周岁的未成年人的商品或者服务的广告不得含有下列内容：  （一）劝诱其要求家长购买广告商品或者服务；  （二）可能引发其模仿不安全行为。  **第四十一条**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组织有关部门加强对利用户外场所、空间、设施等发布户外广告的监督管理，制定户外广告设置规划和安全要求。  户外广告的管理办法，由地方性法规、地方政府规章规定。  **第四十二条** 有下列情形之一的，不得设置户外广告：  （一）利用交通安全设施、交通标志的；  （二）影响市政公共设施、交通安全设施、交通标志、消防设施、消防安全标志使用的；  （三）妨碍生产或者人民生活，损害市容市貌的；  （四）在国家机关、文物保护单位、风景名胜区等的建筑控制地带，或者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禁止设置户外广告的区域设置的。  **~~第四十三条~~** 任何单位或者个人未经当事人同意或者请求，不得向其住宅、交通工具等发送广告，也不得以电子信息方式向其发送广告。  以电子信息方式发送广告的，应当明示发送者的真实身份和联系方式，并向接收者提供拒绝继续接收的方式。  **第四十四条** 利用互联网从事广告活动，适用本法的各项规定。  利用互联网发布、发送广告，不得影响用户正常使用网络。在互联网页面以弹出等形式发布的广告，应当显著标明关闭标志，确保一键关闭。  **第四十五条** 公共场所的管理者或者电信业务经营者、互联网信息服务提供者对其明知或者应知的利用其场所或者信息传输、发布平台发送、发布违法广告的，应当予以制止。  **第四章 监督管理**  **第四十六条** 发布医疗、药品、医疗器械、农药、兽药和保健食品广告，以及法律、行政法规规定应当进行审查的其他广告，应当在发布前由有关部门（以下称广告审查机关）对广告内容进行审查；未经审查，不得发布。  **第四十七条** 广告主申请广告审查，应当依照法律、行政法规向广告审查机关提交有关证明文件。  广告审查机关应当依照法律、行政法规规定作出审查决定，并应当将审查批准文件抄送同级工商行政管理部门。广告审查机关应当及时向社会公布批准的广告。  **第四十八条** 任何单位或者个人不得伪造、变造或者转让广告审查批准文件。  **第四十九条** 工商行政管理部门履行广告监督管理职责，可以行使下列职权：  （一）对涉嫌从事违法广告活动的场所实施现场检查；  （二）询问涉嫌违法当事人或者其法定代表人、主要负责人和其他有关人员，对有关单位或者个人进行调查；  （三）要求涉嫌违法当事人限期提供有关证明文件；  （四）查阅、复制与涉嫌违法广告有关的合同、票据、账簿、广告作品和其他有关资料；  （五）查封、扣押与涉嫌违法广告直接相关的广告物品、经营工具、备等财物；  （六）责令暂停发布可能造成严重后果的涉嫌违法广告；  （七）法律、行政法规规定的其他职权。  工商行政管理部门应当建立健全广告监测制度，完善监测措施，及时发现和依法查处违法广告行为。  **第五十条** 国务院工商行政管理部门会同国务院有关部门，制定大众传播媒介广告发布行为规范。  **第五十一条** 工商行政管理部门依照本法规定行使职权，当事人应当协助、配合，不得拒绝、阻挠。  **第五十二条** 工商行政管理部门和有关部门及其工作人员对其在广告监督管理活动中知悉的商业秘密负有保密义务。  **第五十三条** 任何单位或者个人有权向工商行政管理部门和有关部门投诉、举报违反本法的行为。工商行政管理部门和有关部门应当向社会公开受理投诉、举报的电话、信箱或者电子邮件地址，接到投诉、举报的部门应当自收到投诉之日起七个工作日内，予以处理并告知投诉、举报人。  工商行政管理部门和有关部门不依法履行职责的，任何单位或者个人有权向其上级机关或者监察机关举报。接到举报的机关应当依法作出处理，并将处理结果及时告知举报人。  有关部门应当为投诉、举报人保密。  **第五十四条** 消费者协会和其他消费者组织对违反本法规定，发布虚假广告侵害消费者合法权益，以及其他损害社会公共利益的行为，依法进行社会监督。  **第五章 法律责任**  **第五十五条**　违反本法规定，发布虚假广告的，由工商行政管理部门责令停止发布广告，责令广告主在相应范围内消除影响，处广告费用三倍以上五倍以下的罚款，广告费用无法计算或者明显偏低的，处二十万元以上一百万元以下的罚款；两年内有三次以上违法行为或者有其他严重情节的，处广告费用五倍以上十倍以下的罚款，广告费用无法计算或者明显偏低的，处一百万元以上二百万元以下的罚款，可以吊销营业执照，并由广告审查机关撤销广告审查批准文件、一年内不受理其广告审查申请。  医疗机构有前款规定违法行为，情节严重的，除由工商行政管理部门依照本法处罚外，卫生行政部门可以吊销诊疗科目或者吊销医疗机构执业许可证。  广告经营者、广告发布者明知或者应知广告虚假仍设计、制作、代理、发布的，由工商行政管理部门没收广告费用，并处广告费用三倍以上五倍以下的罚款，广告费用无法计算或者明显偏低的，处二十万元以上一百万元以下的罚款；两年内有三次以上违法行为或者有其他严重情节的，处广告费用五倍以上十倍以下的罚款，广告费用无法计算或者明显偏低的，处一百万元以上二百万元以下的罚款，并可以由有关部门暂停广告发布业务、吊销营业执照、吊销广告发布登记证件。  广告主、广告经营者、广告发布者有本条第一款、第三款规定行为，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五十六条** 违反本法规定，发布虚假广告，欺骗、误导消费者，使购买商品或者接受服务的消费者的合法权益受到损害的，由广告主依法承担民事责任。广告经营者、广告发布者不能提供广告主的真实名称、地址和有效联系方式的，消费者可以要求广告经营者、广告发布者先行赔偿。  关系消费者生命健康的商品或者服务的虚假广告，造成消费者损害的，其广告经营者、广告发布者、广告代言人应当与广告主承担连带责任。  前款规定以外的商品或者服务的虚假广告，造成消费者损害的，其广告经营者、广告发布者、广告代言人，明知或者应知广告虚假仍设计、制作、代理、发布或者作推荐、证明的，应当与广告主承担连带责任。  **第五十七条** 有下列行为之一的，由工商行政管理部门责令停止发布广告，对广告主处二十万元以上一百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并可以吊销营业执照，由广告审查机关撤销广告审查批准文件、一年内不受理其广告审查申请；对广告经营者、广告发布者，由工商行政管理部门没收广告费用，处二十万元以上一百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并可以吊销营业执照、吊销广告发布登记证件：  （一）发布有本法第九条、第十条规定的禁止情形的广告的；  （二）违反本法第十五条规定发布处方药广告、药品类易制毒化学品广告、戒毒治疗的医疗器械和治疗方法广告的；  （三）违反本法第二十条规定，发布声称全部或者部分替代母乳的婴儿乳制品、饮料和其他食品广告的；  （四）违反本法第二十二条规定发布烟草广告的；  （五）违反本法第三十七条规定，利用广告推销禁止生产、销售的产品或者提供的服务，或者禁止发布广告的商品或者服务的；  （六）违反本法第四十条第一款规定，在针对未成年人的大众传播媒介上发布医疗、药品、保健食品、医疗器械、化妆品、酒类、美容广告，以及不利于未成年人身心健康的网络游戏广告的。  **第五十八条** 有下列行为之一的，由工商行政管理部门责令停止发布广告，责令广告主在相应范围内消除影响，处广告费用一倍以上三倍以下的罚款，广告费用无法计算或者明显偏低的，处十万元以上二十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处广告费用三倍以上五倍以下的罚款，广告费用无法计算或者明显偏低的，处二十万元以上一百万元以下的罚款，可以吊销营业执照，并由广告审查机关撤销广告审查批准文件、一年内不受理其广告审查申请：  （一）违反本法第十六条规定发布医疗、药品、医疗器械广告的；  （二）违反本法第十七条规定，在广告中涉及疾病治疗功能，以及使用医疗用语或者易使推销的商品与药品、医疗器械相混淆的用语的；  （三）违反本法第十八条规定发布保健食品广告的；  （四）违反本法第二十一条规定发布农药、兽药、饲料和饲料添加剂广告的；  （五）违反本法第二十三条规定发布酒类广告的；  （六）违反本法第二十四条规定发布教育、培训广告的；  （七）违反本法第二十五条规定发布招商等有投资回报预期的商品或者服务广告的；  （八）违反本法第二十六条规定发布房地产广告的；  （九）违反本法第二十七条规定发布农作物种子、林木种子、草种子、种畜禽、水产苗种和种养殖广告的；  （十）违反本法第三十八条第二款规定，利用不满十周岁的未成年人作为广告代言人的；  （十一）违反本法第三十八条第三款规定，利用自然人、法人或者其他组织作为广告代言人的；  （十二）违反本法第三十九条规定，在中小学校、幼儿园内或者利用与中小学生、幼儿有关的物品发布广告的；  （十三）违反本法第四十条第二款规定，发布针对不满十四周岁的未成年人的商品或者服务的广告的；  （十四）违反本法第四十六条规定，未经审查发布广告的。  医疗机构有前款规定违法行为，情节严重的，除由工商行政管理部门依照本法处罚外，卫生行政部门可以吊销诊疗科目或者吊销医疗机构执业许可证。  广告经营者、广告发布者明知或者应知有本条第一款规定违法行为仍设计、制作、代理、发布的，由工商行政管理部门没收广告费用，并处广告费用一倍以上三倍以下的罚款，广告费用无法计算或者明显偏低的，处十万元以上二十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处广告费用三倍以上五倍以下的罚款，广告费用无法计算或者明显偏低的，处二十万元以上一百万元以下的罚款，并可以由有关部门暂停广告发布业务、吊销营业执照、吊销广告发布登记证件。  **第五十九条** 有下列行为之一的，由工商行政管理部门责令停止发布广告，对广告主处十万元以下的罚款：  （一）广告内容违反本法第八条规定的；  （二）广告引证内容违反本法第十一条规定的；  （三）涉及专利的广告违反本法第十二条规定的；  （四）违反本法第十三条规定，广告贬低其他生产经营者的商品或者服务的。  广告经营者、广告发布者明知或者应知有前款规定违法行为仍设计、制作、代理、发布的，由工商行政管理部门处十万元以下的罚款。  广告违反本法第十四条规定，不具有可识别性的，或者违反本法第十九条规定，变相发布医疗、药品、医疗器械、保健食品广告的，由工商行政管理部门责令改正，对广告发布者处十万元以下的罚款。  **第六十条** 违反本法第二十九条规定，广播电台、电视台、报刊出版单位未办理广告发布登记，擅自从事广告发布业务的，由工商行政管理部门责令改正，没收违法所得，违法所得一万元以上的，并处违法所得一倍以上三倍以下的罚款；违法所得不足一万元的，并处五千元以上三万元以下的罚款。  **第六十一条** 违反本法第三十四条规定，广告经营者、广告发布者未按照国家有关规定建立、健全广告业务管理制度的，或者未对广告内容进行核对的，由工商行政管理部门责令改正，可以处五万元以下的罚款。  违反本法第三十五条规定，广告经营者、广告发布者未公布其收费标准和收费办法的，由价格主管部门责令改正，可以处五万元以下的罚款。  **第六十二条** 广告代言人有下列情形之一的，由工商行政管理部门没收违法所得，并处违法所得一倍以上二倍以下的罚款：  （一）违反本法第十六条第一款第四项规定，在医疗、药品、医疗器械广告中作推荐、证明的；  （二）违反本法第十八条第一款第五项规定，在保健食品广告中作推荐、证明的；  （三）违反本法第三十八条第一款规定，为其未使用过的商品或者未接受过的服务作推荐、证明的；  （四）明知或者应知广告虚假仍在广告中对商品、服务作推荐、证明的。  **第六十三条** 违反本法第四十三条规定发送广告的，由有关部门责令停止违法行为，对广告主处五千元以上三万元以下的罚款。  违反本法第四十四条第二款规定，利用互联网发布广告，未显著标明关闭标志，确保一键关闭的，由工商行政管理部门责令改正，对广告主处五千元以上三万元以下的罚款。  **第六十四条** 违反本法第四十五条规定，公共场所的管理者和电信业务经营者、互联网信息服务提供者，明知或者应知广告活动违法不予制止的，由工商行政管理部门没收违法所得，违法所得五万元以上的，并处违法所得一倍以上三倍以下的罚款，违法所得不足五万元的，并处一万元以上五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由有关部门依法停止相关业务。  **第六十五条** 违反本法规定，隐瞒真实情况或者提供虚假材料申请广告审查的，广告审查机关不予受理或者不予批准，予以警告，一年内不受理该申请人的广告审查申请；以欺骗、贿赂等不正当手段取得广告审查批准的，广告审查机关予以撤销，处十万元以上二十万元以下的罚款，三年内不受理该申请人的广告审查申请。  **第六十六条** 违反本法规定，伪造、变造或者转让广告审查批准文件的，由工商行政管理部门没收违法所得，并处一万元以上十万元以下的罚款。  **第六十七条** 有本法规定的违法行为的，由工商行政管理部门记入信用档案，并依照有关法律、行政法规规定予以公示。  **第六十八条** 广播电台、电视台、报刊音像出版单位发布违法广告，或者以新闻报道形式变相发布广告，或者以介绍健康、养生知识等形式变相发布医疗、药品、医疗器械、保健食品广告，工商行政管理部门依照本法给予处罚的，应当通报新闻出版广电部门以及其他有关部门。新闻出版广电部门以及其他有关部门应当依法对负有责任的主管人员和直接责任人员给予处分；情节严重的，并可以暂停媒体的广告发布业务。  新闻出版广电部门以及其他有关部门未依照前款规定对广播电台、电视台、报刊音像出版单位进行处理的，对负有责任的主管人员和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  **第六十九条** 广告主、广告经营者、广告发布者违反本法规定，有下列侵权行为之一的，依法承担民事责任：  （一）在广告中损害未成年人或者残疾人的身心健康的；  （二）假冒他人专利的；  （三）贬低其他生产经营者的商品、服务的；  （四）在广告中未经同意使用他人名义或者形象的；  （五）其他侵犯他人合法民事权益的。  **第七十条** 因发布虚假广告，或者有其他本法规定的违法行为，被吊销营业执照的公司、企业的法定代表人，对违法行为负有个人责任的，自该公司、企业被吊销营业执照之日起三年内不得担任公司、企业的董事、监事、高级管理人员。  **第七十一条** 违反本法规定，拒绝、阻挠工商行政管理部门监督检查，或者有其他构成违反治安管理行为的，依法给予治安管理处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七十二条** 广告审查机关对违法的广告内容作出审查批准决定的，对负有责任的主管人员和直接责任人员，由任免机关或者监察机关依法给予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七十三条** 工商行政管理部门对在履行广告监测职责中发现的违法广告行为或者对经投诉、举报的违法广告行为，不依法予以查处的，对负有责任的主管人员和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  工商行政管理部门和负责广告管理相关工作的有关部门的工作人员玩忽职守、滥用职权、徇私舞弊的，依法给予处分。  有前两款行为，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六章 附 则**  **第七十四条** 国家鼓励、支持开展公益广告宣传活动，传播社会主义核心价值观，倡导文明风尚。  大众传播媒介有义务发布公益广告。广播电台、电视台、报刊出版单位应当按照规定的版面、时段、时长发布公益广告。公益广告的管理办法，由国务院工商行政管理部门会同有关部门制定。  **第七十五条** 本法自2015年9月1日起施行。 |